

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사 항
의결연월일	1999. ..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1999. 3.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일자 : 1999.3.3
제출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5559호 '98. 9. 16)됨에 따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코자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골자

-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전액 감면, 그다음 3년이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감면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내는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 3년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그기간을 연장확대함(안 제26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함.

3. 법적근거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나. 지방세법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999. 1. 24 ~ 2. 14 (20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공고
-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내지 제29조를 제28조 내지 제31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u>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저액을 면제(공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u> <u>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신 설〉	<p>제2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제26조 내지 제29조(생략)	제28조 내지 제31조(현행과 같음)
〈신 설〉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